

定 款



asia
아세아시멘트

定 款

제정 2013. 08. 23

개정_01 2019. 03. 15

개정_02 2021. 03. 19

개정_03 2022. 03. 18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SIA CEMENT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멘트 제조 및 판매
2. 광산개발 및 同 광석 판매
3. 레미콘, 골재 기타 시멘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4. 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및 하역업
5. 수출입업
6. 기술용역업
7. 주택건설 및 부대사업
8. 부동산 임대업
9. 토목, 건축, 기계, 전기에 관한 건설사업
10. 영림, 영농 및 축산사업
11. 기계 및 장비 임대업
12. 건축자재의 제조 및 판매
13.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운영, 위락, 요식업
14. 전기, 전자, 통신, 정보, 자동화 에너지 관련기기의 제조 및 판매
15. 의약품, 화공약품, 합성수지,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16. 석산개발 및 석재가공 판매
17. 일반요업 및 정밀요업 제품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및 판매
18. 해상화물, 항만운송에 관한 사업
19. 간척사업
20. 공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사업(대기,수질,소음진동)
21. 제지 및 각종 지류가공에 관한 사업
22.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23. 외국상사 대리업
24. 컴퓨터 및 이에 관련된 기술 용역업

- 25. 가스류, 금속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 26. 식품제조 및 판매업
- 27. 증권, 보험, 단자업
- 28. 도료, 안료, 접착제, 잉크의 제조 판매 및 시공
- 29.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설계, 시공에 관한 사업
- 30. 인터넷 관련사업
- 31. 내외국법인과 前 각호에 관련되는 사업에의 투자 및 합작투자
- 32. 슬래그관련 제조 및 판매
- 33. 탄소배출권의 개발, 판매, 용역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34. 신재생에너지사업
- 35.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관련 배출권 판매 등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36.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 37. 前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siacement.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일보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액면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로 발생하는 보통주 3,295,809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만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동등 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 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명부 작성 · 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삭제> 2021.3.19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 지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⑦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500원으로 할 수 있다.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 지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⑥ <삭제>2021.03.19

⑦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원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충북 제천시(지점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지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그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 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상기 제3항의 순서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29조(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0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3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고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②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윤리경영위원회
 - 2. 내부거래위원회
 -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4(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규정)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 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3조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 사

제36조 (감사)

- ①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의2(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6조의3(감사의 보선)

감사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36조의4(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제36조의5(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6(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 산

제37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매기말에 결산한다.

제38조(재무제표의 작성 · 비치)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 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외부감사인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0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 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삭제>2021.03.19

제41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42조(세칙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3조(규정외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법령에 의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 관 목 차

구 분	주 석	페이지	
제1장	총칙	5	
제1조	상호	5	
제2조	목적	5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6	
제4조	공고방법	6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제2장	주식	6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200,000,000주	6
제6조	일주의 금액	500원	6
제7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3,295,809주	7
제8조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종류주식	7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50,000,000주/무의결권주	7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지등록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7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7	
-2	동등배당	9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9	
제12조	주주명부작성 · 비치	9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2월31일	9
제3장	사채	9	
제14조	사채의 발행	9	
-2	전환사채의 발행	300,000,000,000원 이내	10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300,000,000,000원 이내	10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지등록		12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2	
제4장	주주총회	12	
제17조	소집시기	사업년도종료후 3월이내	12
제18조	소집권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12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12
제20조	소집지	12	
제21조	의장	대표이사	13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3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13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13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3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임장 제출	13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3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4	

제2조(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이 회사는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영문으로는 ASIA CEMENT CO., Ltd.)의 회사분할(분할기일 : 2013년 10월 1일)에 의하여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종류주식에 대한 경과 조치)

해당사항 없음

제5조(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분할 전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의 명칭, 주소 및 대표이사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대표이사 사장 이 훈 범

정 관 목 차

구 분	주 속	페이지
제5장	이사·이사회	14
제29조	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이사는 3명이상 12명이내 / 사외이사는 0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4
제30조	이사의 임기 2년	14
제31조	이사의 보선 주주총회에서 선임	14
제32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14
제33조	이사회 회일 7일전에 통지	14
-2	이사의 보고의무 3월에 1회이상 이사회에 보고	15
-3	위원회	15
-4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규정	15
제34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5
제35조	상담역 및 고문	16
제6장	감사	16
제36조	감사 1명	16
-2	감사의 임기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료시 까지	16
-3	감사의 보선	16
-4	감사의 직무	17
-5	감사록	17
-6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주주총회 결의	17
제7장	계산	17
제37조	사업년도 1월1일~12월말일	17
제38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17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정기주총시 보고	18
제39조	이익금의 처분	18
제40조	이익배당	18
-2	중간배당	19
제41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19
제42조	세칙내규	19
제43조	규정외 사항	19
제8장	부칙	19
제1조	시행일	19
제2조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20
제3조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20
제4조	종류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20
제5조	분할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20